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 1. ○ 예 산 현 액 : 11억 6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 34억 2천 5백만원
- 실제수납액 : 28억 9천만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 수 납 액 : 5억 3천 5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84.4%(전년도 90%)임.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 수납률 (C/B)
합 계	1,166	3,425	2,890	-	535	247.9	84.4
세외수입	1,156	3,415	2,880	-	535	249.1	84.3
경상적세외수입	29	74	53	-	21	182.8	71.6
사업수입	21	-	-	-	-	-	-
기타사업수입	21	-	-	-	-	-	-
이자수입	8	74	53	-	21	662.5	71.6
기타이자수입	8	74	53	-	21	662.5	71.6
임시적 세외수입	1,127	3,341	2,827	-	514	250.8	84.6
기타수입	1,057	3,197	2,687	-	510	254.2	84.0
사도비반환금수입	819	2,681	2,171	-	510	265.1	81.0
그외수입	238	516	516	-	-	216.8	100.0
지난연도수입	70	144	140	-	4	200	97.2
보조금	10	10	10	-	-	100	100.0
국고보조금등	10	10	10	-	-	100	1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	10	10	-	-	100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551억 4천 만원

○ 예산증감 : 7억 7천 5백만원

○ 예산현액 : 559억 1천 5백만원

○ 지출액 : 534억 4천만원

○ 이월액 : 3억 8천 5백만원

○ 불용액 : 20억 9천 1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7%(전년도 2%)가 발생
- 주요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예산집행잔액 19억 1천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백만원 등임.

<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총 예산	55,915	53,440	385	2,091	3.7%
사업예산계	55,790	53,320	385	2,085	3.7%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2,976	2,021	284	671	22.5%
시민민주주의기반조성	2,976	2,021	284	671	22.5%
시민제안발굴 및 실행	2,976	2,021	284	671	22.5%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661	615	-	46	7.0%
민주시민양성 기반조성	661	615	-	46	7.0%
민주시민교육 추진	661	615	-	46	7.0%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723	708	-	15	2.1%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723	708	-	15	2.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673	666	-	7	1.0%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20	15	-	5	25.0%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시민참여)	30	27	-	3	10.0%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21,061	20,335	101	625	3.0%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21,061	20,335	101	625	3.0%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515	435	-	80	15.5%
서울시 NPO 지원센터 운영	2,393	2,198	-	195	8.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397	2,347	16	34	1.4%
서울시 동북권MNPO지원센터 운영	692	659	-	33	4.8%
지역협치 활성화	3,534	3,342	-	192	5.4%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250	111	85	54	21.6%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체결	156	124	-	32	20.5%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24	19	-	5	20.8%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11,100	11,100	-	-	0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30,369	29,641	-	728	2.4%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30,369	29,641	-	728	2.4%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11,731	11,097	-	635	5.4%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403	348	-	55	13.6%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482	5,481	-	-	0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1,779	1,763	-	16	0.9%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지원(마을분야)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8,476	8,454	-	22	0.3%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50	50	-	-	0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2,388	2,388	-	-	0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시민참여)	50	50	-	-	0
사람이 아름다운 약초마을 만들기(시민참여)	10	10	-	-	0
일 반 예 산 계	125	120	-	5	4%
기 본 경 비	125	120	-	5	4%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조직신설에 따른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위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사무관리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에서
3백만원

총 1건, 3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2019년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 사회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비 이체 29억 7천 6백만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 ▶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비 이체 6억 6천 1백만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 협치담당관으로

▶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비 이체 35억 3천 4백만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 협치담당관으로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사업비 이체 111억원

총 11개 사업, 182억 7천 1백만원을 이체하였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조직신설로 인한 국 소속직원 특정업무경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 사업에서 1천 4백만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현원 증가(예산 편성시 9명 → 15명)로 인한 특정 업무경비 부족분 발생으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 특정업무 경비) 사업에서 6백만원

총 2건, 2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3건, 3억 8천 5백만원

○ 사고이월

계약 준공기한 미도래로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사업비 사고이월 2억 8천 4백만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비 사고이월 1천 6백만원

-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사업비 사고이월 8천 5백만원

총 3건, 3억 8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19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1개 사업에 1천만원

총 1개 부처, 1개 사업에 1천만원 보조금을 수령하여
1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관리 공유재산

- 토지 1,156.3 m^2 41억 9천 3백만원,

- 건물 2,809.7 m^2 114억 7천 1백만원,

- 기타 1건 1억 3천 5백만원,

총 157억 9천 9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2,900	2,899	-	15,799	
행정 재산	합 계	12,900	2,661	-	15,561
	공용재산	12,900	29	-	12,929
	공공용재산	-	2,632	-	2,632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	238	-	238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 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96개, 현재액은 3억 3백만원임.

〈 2019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품명	단위	정수	내용연수	구분	2018 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									2019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합계			56		수량	16	4	23	0	53	80	0	0	0	0	0	96
					금액	17.6	3.7	238.4	0	43.1	285.1	0	0	0	0	0	302.7
8	화물트럭	대	2	8	수량	0	0	2	0	0	2	0	0	0	0	0	2
					금액	0	0	202.9	0	0	202.9	0	0	0	0	0	0
39	냉방기	대	0	10	수량	0	0	0	0	1	1	0	0	0	0	0	1
					금액	0	0	0	0	2.2	2.2	0	0	0	0	0	0
41	냉난방기	대	3	9	수량	0	0	0	0	13	13	0	0	0	0	0	13
					금액	0	0	0	0	12.8	12.8	0	0	0	0	0	0
52	노트북 컴퓨터	대	40	6	수량	14	4	12	0	24	40	0	0	0	0	0	54
					금액	15.4	3.7	21	0	18.7	43.4	0	0	0	0	0	0
54	비디오 프로젝터	개	8	8	수량	1	0	7	0	9	16	0	0	0	0	0	17
					금액	1.8	0	10.9	0	7	17.8	0	0	0	0	0	0
57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이장치	개	0	5	수량	0	0	0	0	5	5	0	0	0	0	0	5
					금액	0	0	0	0	1.6	1.6	0	0	0	0	0	0
58	디지털 캠코더/ 비디오 카메라	개	3	9	수량	1	0	2	0	1	3	0	0	0	0	0	4
					금액	0.4	0	3.6	0	0.8	4.4	0	0	0	0	0	0

II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및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84.4%로 전년도(90.0%)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며,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수입’은 당초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징수액이 전혀 없는 반면,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는 예산액(8백만원, 8억1천9백만원) 대비 실제수납액(5천3백만원, 21억7천1백만원) 비율이 각각 662.5%, 265.1%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합 계	1,166	3,425	2,890	-	535	247.9	84.4
세외수입	1,156	3,415	2,880	-	535	249.1	84.3
경상적세외수입	29	74	53	-	21	182.8	71.6
사업수입	21	-	-	-	-	-	-
기타사업수입	21	-	-	-	-	-	-
이자수입	8	74	53	-	21	662.5	71.6
기타이자수입	8	74	53	-	21	662.5	71.6

임시적 세외수입	1,127	3,341	2,827	-	514	250.8	84.6
기타수입	1,057	3,197	2,687	-	510	254.2	84.0
사·도비반환금수입	819	2,681	2,171	-	510	265.1	81.0
그외수입	238	516	516	-	-	216.8	100.0
지난연도수입	70	144	140	-	4	200.0	97.2
보조금	10	10	10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10	10	10	-	-	100.0	1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	10	10	-	-	100.0	100.0

- 세입예산액(11억6천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34억2천5백만원) 및 수납액(28억9천만원)의 차이가 과도한 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의 탄력성, 경기변동 상황 등 세수 추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정확한 세수추계기법 미활용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사안별로 모든 세입 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를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32건에 5억 3천 1백만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분	계	금액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5	건수	11	10	-	1	-	-	-
2015	금액	3,272	164	-	3,108	-	-	-
2016	건수	5	5	-	-	-	-	-
2016	금액	26	26	-	-	-	-	-
2017	건수	1	1	-	-	-	-	-
2017	금액	5	5	-	-	-	-	-
2018	건수	3	1	2	-	-	-	-
2018	금액	545	32	512	-	-	-	-
2019	건수	32	10	5	3	5	7	2
2019	금액	531,190	354	1,925	4,523	35,775	197,530	291,080

○ 미수납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중 발생한 집행잔액 미반납 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주민제안 사업 등에 보조금을 교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아직도 납부되지 않은 건들도 상당한 실정임.

〈자치구 보조금 교부 내역 중 2014년, 2015년 이후 지속 체납내역〉

(단위 : 원)

부서명	결산예산 과목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과세 년월	최초 과세일자	주민 /법인명	항목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난연도 수입	10,800	10,800	2014-07	2014-07-28	구로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350	350	2015-02	2015-02-23	강남구청장	'14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24,220	24,220	2015-10	2015-10-01	종로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4,090	4,090	2015-10	2015-10-01	성동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9,930	9,930	2015-10	2015-10-01	광진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40,730	40,730	2015-10	2015-10-01	동대문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6,120	6,120	2015-10	2015-10-01	중랑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21,040	21,040	2015-10	2015-10-01	노원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부서명	결산예산 과목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과세 년월	최초 과세일자	주민 /법인명	항목
	수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30,960	30,960	2015-10	2015-10-01	은평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19,190	19,190	2015-10	2015-10-01	영등포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7,920	7,920	2015-10	2015-10-01	강동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6,100	6,100	2016-07	2016-07-19	구로구청장	'15 우리마을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4,130	4,130	2016-11	2016-11-15	성동구청장	'14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110	110	2016-03	2016-03-03	도봉구청장	'15 마을인연맺기 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11,580	11,580	2016-02	2016-02-29	종로구청장	'15 자치구 특화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4,770	4,770	2016-06	2016-06-01	강서구청장	'15 아파트공동체 특화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5,450	5,450	2017-03	2017-03-14	송파구청장	'16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299,220	299,220	2018-06	2018-06-08	중구청장	'17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집행잔액
	지난연도 수입	32,900	32,900	2018-06	2018-06-08	중구청장	'17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 수입	213,020	213,020	2018-06	2018-06-08	강북구청장	'17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반 환금수입	5,505,780	5,505,780	2019-07	2019-07-04	강동구청장	'18 찾동(마을분야) 집행잔액
	시·도비반 환금수입	23,118,480	23,118,480	2019-07	2019-07-04	노원구청장	'18 찾동(마을분야) 집행잔액
	시·도비반 환금수입	2,016,330	2,016,330	2019-05	2019-05-31	은평구청장	'18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반 환금수입	6,801,350	6,801,350	2019-05	2019-05-31	중구청장	'18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반 환금수입	38,400	38,400	2019-06	2019-06-20	성동구청장	'17 일반 마을활력소 집행잔액
	시·도비반 환금수입	8,780,770	8,780,770	2019-06	2019-06-17	강동구청장	'18 일반 마을활력소 집행잔액
	시·도비반 환금수입	145,783,830	145,783,830	2019-06	2019-06-17	강동구청장	'18 일반 마을활력소 집행잔액
	기타이자 수입	56,540	56,540	2019-05	2019-05-31	은평구청장	'18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이자발생액
	기타이자 수입	14,120	14,120	2019-08	2019-08-28	구로구청장	'18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이자발생액
	기타이자 수입	258,790	258,790	2019-07	2019-07-02	중구청장	'18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이자발생액
	기타이자 수입	60,310	60,310	2019-08	2019-08-28	구로구청장	'18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이자발생액
	기타이자 수입	284,710	284,710	2019-07	2019-07-04	강동구청장	'18 찾동(마을분야) 이자발생액
	기타이자 수입	7,188,390	7,188,390	2019-06	2019-06-17	강동구청장	'18 일반 마을활력소 이자발생액
	기타이자	428,020	428,020	2019-06	2019-06-17	강동구청장	'18 일반 마을활력소

부서명	결산예산 과목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과세 년월	최초 과세일자	주민 /법인명	항목
	수입						이자발생액
	기타이자 수입	11,652,490	11,652,490	2019-06	2019-06-17	강동구청장	'18 일반 마을활력소 이자발생액
	기타이자 수입	950	950	2019-06	2019-06-04	강서구청장	'18 시민참여예산 이자발생액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부하는 보조금의 내실있는 사업 집행과 정산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문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위해 3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9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 관리비	1,667,000	△3,155	-	2019 -08-20	1,663,845	1,204,599	459,245 (27.6%)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	3,155		3,155	3,125	29 (0.9%)	

-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으로 조직신설로 인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 에서 국 소속직원 ‘특정업무경비’ 예산 확보를 위한 1천 4백만원의 변경사용하였고,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현원 증가(예산 편성시 9명 → 15명)로 인한 특정 업무경비 부족분 발생으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 에서 6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시민	사무	1,681,000	△14,000	-	2019	1,667,000	1,204,599	459,245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재안 발굴 및 실행	관리비				-08-13			(27.6%)	
	특정업 무경비	-	-	14,000		14,000	12,835	1,164 (8.3%)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무 관리비	393,538	△6,315		2019 -11-27	387,223	381,928	5,294 (1.4%)	
	특정업무 경비	22,500	-	6,315		28,815	28,814	790 (0%)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조직 신설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조직 신설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않아 '통계목'(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 및 전용하였으며,
 - 감액 변경사용(1천4백만원) 및 전용(3백만원)한 '사무관리비'는 그 이후에도 4억5천9백만원(27.6%)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신중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 편의적인 사고이월 등 지양 필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2019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등 총 3건에, 3억 8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2018년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에 이어 2019회계연도에는 ‘전산개발비’를 사고이월처리하였음.

〈 2019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㉓		집행잔액 ㉑-㉒-㉓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전산 개발비	721,738	567,368	283,684		283,684	154,369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 관리비	137,300	135,479	119,479		16,000	1,820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공공 운영비	100,000	85,121			85,121	14,878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 제안 위주의 ‘민주주의 서울’을 서울의 공론장으로 하여 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려는 것이나,
- 2018회계연도는 당해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조정된 “민주주의 서울 ISP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연구용역비’ 1억 1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시킨바 있으며,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세부사업	동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8년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연구 용역비	259,000	233,090	116,545		116,545	25,910

- 연구용역의 사고이월(민주주의 서울 ISP 수립 용역 기간 2018.12.~2019.5.)과 맞물려 전산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또한 연속적으로 사고이월처리(2019. 7.~2020. 2.)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편성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 공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사업은 7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 8천 3백만원 (39.3%)을 사고이월시키면서 1억5천4백만원(21.4%)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러한 예산의 과다 편성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사업의 8천 5백만원 사고이월은 동남권 NPO지원센터 임대차 계약 및 센터 내부수선 공사 발주의 지연으로 인해 지출원인행위 후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2019년 10월 25일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여 내부 수선 등의 공사발주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 이로 인해 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개관일은 당초 2020년 1월이었으나,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1.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명 칭 :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 개관시기(안) : 2020년 1월
- 소재지(안)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5, 4층(가락동)
- 시설규모(안) : 386.55㎡(전용 약250㎡)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p>지역여건</p>	<p>지하철3·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 부근으로 동남권 내 소통·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접근성이 뛰어나 (송파경찰서, 우체국 등 밀집)</p>

2.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0.1.1. ~ 2022.12.31.)

3.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0년 소요예산 : 700,000천원('20년도 예산편성 추진)
 - 민간위탁금 700백만원 (인건비 250, 운영비 196, 사업비 254)

- 3월에 개관하는 등 개관일을 미준수하였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공급의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의 불필요한 예산의 과잉 편성(민간위탁금 1월과 2월분)을 초래하였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사고이월은 단지 당해연도 편성예산의 미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시기 지연을 초래 하고 그 지연의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성실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관련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2019.6.)에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천만원을 증액 조정한 바 있음.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019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자차 단체 자본 보조	2019년 추경	2,690,000	2,690,000	0	-
		본예산	6,805,600	6,341,609	463,991	당초 4개소의 찾동 마을활력소에 대한 예산 편성하여 조성 계획하였으나, 실제 1개소만 신청접수 및 선정됨에 따라 일부 예산 불용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노원구)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교부받은 시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음.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이월액 발생사유
		편성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편성 (교부)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6.1. 현재)	
합 계	11,017,000	11,017,000	960,933	10,056,067	0	7,747,438	761,856	기존 '19. 6월 완료 예정이었던 실시설계 일정이 관계부서 의견조율 지연으로 '19. 10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공사발주 시기가 '20년도로 연기됨
시비	2,690,000	2,690,000	-	2,690,000	-	2,104,568	258,887	
구비 (특별교부금 2,100,000천원)	7,727,000	7,727,000	695,877	7,031,123	-	5,307,926	477,627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이월액 발생사유
		편성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편성 (교부)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6.1. 현재)	
포함)								
기타 (특별교부세)	600,000	600,000	265,056	334,944	-	334,944	25,342	

※2020. 2. 1.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공정율 9.1%
 (2020.6.1.현재)

○ 동 사업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부받은 자치구는 전액을 이월처리 하였는바,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신속한 필요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를 위하여 편성 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의 투자시기와 적정성 등의 철저한 사전 검토는 물론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편성된 예산은 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사업은 매년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빈번한 사업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잘 조성되고 운영 되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의 교부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0,495,000	△56,960		2018-10-07	10,224,770	10,224,770	0	
	민간 위탁금	530,000		56,960		586,960	584,862	2,097 (0.4%)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215,000	△24,950		2018-08-07	179,050	153,299	25,751 (14.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4,950		24,950	24,875	74 (0.3%)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90,050	△11,000		2018-08-07	179,050	153,299	25,751 (14.4%)	
	행사 운영비			11,000		11,000	10,670	330 (3.0%)	

〈2017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100,000		2017-08-25	150,000	50,000	100,000 (66.7%)
	자치단체 자본보조	6,873,000		100,000		6,973,000	6,973,000	-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 잔액 ㉔-㉑-㉒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6	계		3,978,000	3,421,180	3,421,180	550,000	0	6,820

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3,941,000	3,421,180	3,421,180	513,000	0	6,8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22,000	0	0	22,000	0	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15,000	0	0	15,000	0	0
20 17 년	계		1,569,796	663,025	82,534	918,375	488,059	80,8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467,933	655,925	82,534	853,512	480,959	50,9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51,863	7,100	0	29,863	7,100	14,90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50,000	0	0	35,000	0	15,000
20 18 년	계		1,584,705	1,563,710	904,907	0	658,803	20,995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547,742	1,546,787	897,807	0	648,980	955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36,963	16,923	7,100	0	9,823	20,040

○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 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 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마을활력소 조성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전액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막상 자치구에서는 지속적, 반복적인 예산 이월로 현재 까지 2019년에 교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마을활력소가 개소하지 못한 자치구가 대다수 인바,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2019년 당초계획		자치구 집행현황				개소 여부
			전년 이월액	2019년 집행실적	집행잔액	차년도 이월액	
	편성예산	9,031,609	7,305,482	3,135,532 (19.2%)	73,504 (0.4%)	13,128,054 (80.6%)	
1	강동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강동구 천호동)	0	2,325,000	960,049	18,931	1,346,020	미개소 ('20.6월 준공예정)
2	어울향기 마을활력소 (강북구 번3동)	0	288,166	271,993	16,172	0	개소 ('19.12월)

	2019년 당초계획	자치구 집행현황				개소 여부	
		전년 이월액	2019년 집행실적	집행잔액	차년도 이월액		
3	고랑울림 마을활력소 (광진구 중곡4동)	0	289,991	289,311	680	0	개소 (`19.7월)
4	가리봉동 자치회관 (구로구 가리봉동)	0	400,024	31,300	0	368,724	미개소 (`20.7월 예정)
5	노원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노원구 중계4동)	2,690,000	0	0	0	2,690,000	미개소 (`21.6월 준공예정)
6	산돌 마을활력소 (도봉구 방학1동)	0	879,000	34,160	0	844,840	미개소 (`20.6월 준공예정)
7	시골벽적 마을활력소 (도봉구 창2동)	0	500,000		0	500,000	미개소 (`20.8월 준공예정)
8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도봉구 쌍문2동)	1,700,000	0	0	0	1,700,000	미개소 (`21년 준공예정)
9	보라매동지 마을활력소 (동작구 신대방2동)	22,000	0	19,972	2,028	0	개소 (`18.12월)
10	이수 마을활력소 (동작구 사당2동)	120,000	178,124	178,035	89	120,000	개소 (`20.5월)
11	천연응달샘 마을활력 소 (서대문구 천연동)	14,009	0	13,888	121	0	개소 (`17.3월)
12	문화공간 이육사 (성북구 종암동)	0	1,345,177	1,309,694	35,483	0	개소 (`19.12월)
13	송파구 거점형 마을 활력소 (송파구 거여2동)	1,592,800	1,100,000	12,730	0	2,680,070	미개소 (`21년 준공예정)
14	다산마루 (중구 다산동)	200,000	0	0	0	200,000	미개소 (`20.하반기 준공예정)
15	중랑구 거점형 마을 활력소 (중랑구 망우동)	2,692,800	0	14,400	0	2,678,400	미개소 (`21년 준공예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공간 조성 숫자에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사업의 정당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p>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p>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라.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6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99억 4천 5백만원 중 불용액은 7억 2천 5백만원(불용률 7.3%)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1.8%)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단위 :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시작일	종료일	위탁구분					
계	-	-	-	9,945,266	9,879,161	9,154,003	725,158	7.3%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17. 4.3	'19. 6.30	신규	654,984	610,115	508,941	101,174	16.6%
	'19. 9.11	'22. 9.10	재위탁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3.11.15	'16.11.14	신규	2,382,835	2,362,322	2,189,430	172,892	7.3%
	'16.11.15	'19.11.14	재계약					
	'19.11.15	'22.11.14	재위탁(공모)					
동북권NPO 지원센터	'18.06.15	'20.06.14	신규	683,904	683,904	658,860	25,044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12.08.23	'15.08.22	신규	5,481,521	5,481,521	5,061,748	419,773	7.2%
	'15.08.23	'18.08.22	재계약					
	'18.08.23	'21.08.22	재계약					
마포마을활력소 운영	'18.2.14.	'21.2.13.	신규	236,937	236,937	233,083	3,853	1.6%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18.1.9.	'21.1.8.	신규	505,085	504,362	501,940	2,422	0.5%

1) 민간위탁 사업의 과도한 전용 및 변경사용

-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4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분야	사업명		감액	증액				
사업비	시민사회 발전연구	180,128	△20,000		서울시 승인일 19.6.7.	160,129	126,206	33,923 (21.2%)
	대외협력	82,411		20,000		102,411	-	-
사업비	대외협력	102,411	△19,811		서울시 승인일 19.8.22.	82,600	71,070	11,530 (11.3%)
	활동가역량 강화지원사업	66,310		7,800		74,110	72,670	1,440 (1.9%)
	정보 아카이브	45,315		12,011		57,327	46,549	10,778 (18.8%)

- 주요 사유로는 “대외협력사업” 확대를 위해(사업비 ⇒ 사업비) “시민사회발전 연구”사업에서 2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활동가역량강화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사업비 ⇒ 사업비) “대외협력사업”에서 780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정보아카이브” 사업 확대를 위해(사업비 ⇒ 사업비) “대외협력사업”에서 1천 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대외협력사업”은 2019년 6월에는 동 사업의 확대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변경사용하였으나, 2019년 8월 동 사업에서 다시 2천만원을 감액 변경 사용하였는바,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감액 변경사용이후에도 11.3%의 불용액(1천1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거나, 불성실한 사업집행을 반증하는 것임.
- “시민사회발전연구”는 예산을 감액 변경사용했음에도 21.1%(3천3백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정보아카이브” 사업의 경우도 증액 변경사용하였으나,
- 증액 변경 사용(1천2백만원)한 금액과 유사한 예산(1천1백만원)이 불용된바, 과도한 증액 변경사용으로 보이며 이는 “대외협력사업”의 감액 변경사용으로 동 사업의 불용액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대외협력사업”의 경우에는 2018회계연도에도 1천 2백만원을 감액 변경 사용했음에도 1천 1백만원(31.4%)을 불용처리하였는바, 동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 규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센터의 2019년 ‘민간 위탁금’의 사고이월은 총 2건, 1천 3백만원으로

- “2020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홍보 사업”에서 1천 1백만원(사업비)을 사고이월시켰으며(2019년 12월 26일),
- “2019년 정산검사 보고서”의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지급수수료’ 2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음(2019년 12월 26일).
-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준공 기간 미도래 등 사업의 불성실한 집행으로 인한 편법적인 사고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금은 회계연도 종료시 법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센터에 대한 2019년 지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계약 건별 계약관리 대장을 실물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중 누락,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누락,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 검수조서 등 누락, 서울시 NPO지원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작의 준공 전 대가 지급, 지원사업 정산 검토 기록 누락 등 회계와 계약상의 미흡한 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9년 지도점검 결과〉

□ 분야별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

○ 사무편람 운영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는 사무편람으로 운영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두고 있음 ○ 운영규정은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 개정 중 ○ 그러나 규칙 대부분(복무, 재무회계, 계약, 취업, 대관운영 등) 17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비해 최신화 되지 않음
조치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및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등 기반 사무편람(규정, 규칙, 업무매뉴얼 등) 전면 개편 후 ‘시’에 승인 요청 실시 (기한 : 지도·점검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 연1회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정기적 사무편람 개정 후, ‘시’에 승인 요청 실시 - 운영규정은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기타사항은 담당부서 승인

○ 계약·지출 업무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건별 계약관리대장을 실물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중 누락된 경우들이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도 누락된 경우 발생 ○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 검수조서 등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PM용역계약(2019-1, 3, 5) 대가지급 관련 활동일지만 있음 ○ 산출기초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발전연구 시민사회포럼 번역비 지급(‘18.12.14.)〉 ○ 회의참석비 산출근거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발전연구 시민사회포럼 회의비 지급(‘18.11.27.)〉 회의결과 요약보고서 누락 및 회의종료시각 미기재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과정, 위원 추첨과정 기록 부재 〈2018 NPO 국제컨퍼런스 운영 대행 용역 계약〉 ○ 계약추진 내부결재 일자보다 과업내용서상 과업시작이 빠름
-------------	--

	<p>〈2018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전 대가 지급 <p>〈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기획·제작·발간되므로 발간되는 해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는 '18.12.7.~'19.4.30.을 과업기간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8.12.17.에 준공 없이 대가 전액 지급
<p>조치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관련 업무 전면 개편, 사무편람 개정 및 업무매뉴얼 확립 ○ 계약관리 대장 관리 철저 및 최신화, 실물과 온라인 자료 일치 노력 제고 ○ 수의계약 체결 적정성 관련 내부 통제 철저(동일 과업 분할 계약, 이해관계 충돌(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 선급금 지급 필요성 판단 철저 및 준공시 선급금 정산(지출증빙 포함) 철저 ○ 결재문서, 계약 관련 서류 및 증빙 서류간 정합성 철저 확인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생년 명기, 예비명부 구성 및 추첨과정 기록 등 ○ 1인견적 수의계약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및 증빙(견적·타견적)자료 확인 철저
<p>○ 복무관리</p>	
<p>점검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관리 상황이 개별 결재문서로 관리되고 있음 ○ 복무 관련 규정, 규칙에 중복된 내용이 있거나 최신화되지 않은 사항 존재
<p>조치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초과근무, 출장, 휴가·휴무, 당직, 유연근무 등) ○ 사무편람 개정 및 규정, 규칙 등 정비 - 출장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신청서 작성, 출장비 지급기준 세분화 등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를 수령하여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출장신청서 및 결과보고 등 기록
<p>○ 인사관리</p>	
<p>점검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지급관련 변동 내역 일부 미기재 ○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외부인력풀 확충 ○ 취업규칙 일부 내용 상위법 반영 최신화 필요

	- 육아휴직 사용(남녀고용평등법), 근속기간 산정(병역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조치할 사항	○ 가족수당 등 지급시 관련 증빙 정기점검 ○ 인사위원회 구성 등 인사·채용 관련 규정·규칙 정비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기반으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지원사업 관리

점검결과	○ 지원사업 정산 검토 기록 누락 지원사업 실행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단체로부터 정산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뒤 지원금에 대한 정산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8 조직변화지원사업 결과보고(19.1.8.)>, <2018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결과보고>, <2018 활동가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 등 내부결재 문서에 정산 검토 결과 누락 ※ '18년도 지도·점검시 동일 사항 조치 요구한 바 있음
조치할 사항	○ 지원사업 관련 정보 분산 NPO지원센터 홈페이지(웹플랫폼) <지원사업> 메뉴에 공모 관련 소개는 잘 되어 있으나, 이후 선정사항, 추진사항 등은 따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지원금 정산 검토 결과 반드시 첨부 ○ 지도·점검 및 외부 감사 등 지적사항 재발 방지 ○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의 추진사항, 결과보고 등을 통합적으로 공개, 안내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운영 개편 필요 → 미지원 단체들의 접근성 제고

○ 기타 사항

점검결과	○ 예산·회계는 공인회계사 분기별 정산감사를 통해 관리중 ○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규정에 따르고 있음 ○ 전자식 출퇴근 기록기를 통해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처리중 ○ 화재·상해 보험 가입하였으며, 부림빌딩 소방계획·소방시설 점검 등 이상없음 ○ 당직근무 실시 중이며 안전점검일지 작성 상태 양호 ○ 비상대책 모의 훈련 연1회 실시중 ○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상태 양호
-------------	--

-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 점검시에도 권역별 중간지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 서류 등의 누락 사례가 있는바, 반복적인 계약, 지출 서류의 누락 등이 지속적,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19년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	인건비 소계	844,520,304	769,844,308	74,675,996	91.2%
인건비-기본급	기본급	522,294,900	484,603,332	37,691,568	92.8%
인건비-제수당	연장근로수당	78,883,640	64,709,116	14,174,524	82.0%
	관리업무수당	4,906,100	4,715,405	190,695	96.1%
	정근수당	32,155,493	29,164,077	2,991,416	90.7%
	정근수당가산금	8,190,000	6,916,817	1,273,183	84.5%
	가족수당	8,640,000	5,427,591	3,212,409	62.8%
	자녀학비보조수당	1,873,200	1,873,200	0	100.0%
	정액급식비	24,960,000	23,564,159	1,395,841	94.4%
	명절휴가비	52,104,840	44,457,660	7,647,180	85.3%
	연차수당	8,105,088	4,500,580	3,604,508	55.5%
	직급보조비	32,250,000	30,176,330	2,073,670	93.6%
	서울생활임금수당	5,193,943	5,317,393	-123,450	102.4%
인건비-퇴직총당금	퇴직총당금	64,963,100	64,418,648	544,452	99.2%
운영비	운영비 소계	412,015,424	388,432,181	24,037,243	94.3%
운영비-운영경비	여비	10,308,000	8,922,850	1,385,150	86.6%
	교육훈련비	8,300,000	7,460,628	839,372	89.9%
	우편통신비	8,120,000	7,867,090	252,910	96.9%
	유인물비	3,500,000	3,309,330	190,670	94.6%
	교통유발부담금	1,548,840	1,683,570	-134,730	108.7%
	도서구입비	400,000	332,210	67,790	83.1%
	사무용품비	6,016,800	5,238,570	778,230	87.1%
	급량비	3,600,000	2,200,000	1,400,000	61.1%
	업무추진비	6,900,000	4,245,550	2,654,450	61.5%
	건물관리비	226,620,000	226,289,360	330,640	99.9%
	보증보험료	587,200	412,260	174,940	70.2%

	복리후생비	4,800,000	4,166,041	633,959	86.8%
	범용S/W 구입비	500,000	450,000	50,000	90.0%
	사무운영프로그램비	6,352,000	6,091,250	260,750	95.9%
	지급수수료	9,455,000	9,246,242	208,758	97.8%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6,726,439	24,681,140	2,045,299	92.3%
	자산취득비	5,000,000	4,424,030	575,970	88.5%
	운영수당	5,088,000	3,221,000	1,867,000	63.3%
	네트워크추진비	6,000,000	6,000,000	0	100.0%
운영비-보험료	국민연금	32,067,005	25,975,940	6,091,065	81.0%
	건강보험	24,559,538	22,224,540	2,334,998	90.5%
	장기요양보험	1,043,780	1,860,790	-817,010	178.3%
	산재보험	7,679,608	6,226,980	1,452,628	81.1%
	고용보험	6,843,215	5,448,810	1,394,405	79.6%
운영비-주민세	주민세		454,000	0	0.0%
사업비	사업비 소계	1,126,300,000	1,031,153,808	95,146,192	91.6%
사업비	사업설명회	15,000,000	12,189,310	2,810,690	81.3%
	조직변화지원사업	95,770,000	89,922,571	5,847,429	93.9%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92,410,000	90,757,493	1,652,507	98.2%
	활동가역량강화지원사업	66,600,000	72,669,807	-6,069,807	109.1%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1,700,000	1,683,200	16,800	99.0%
	NPO참여예산제	74,000,000	72,982,439	1,017,561	98.6%
	NPO지원박람회(파트너페어)	143,010,000	143,010,000	0	100.0%
	NPO상담소	34,000,000	31,417,180	2,582,820	92.4%
	대외협력	82,411,400	71,070,362	11,341,038	86.2%
	국제컨퍼런스	138,360,000	132,068,199	6,291,801	95.5%
	시민사회발전연구	181,540,000	126,205,848	55,334,152	69.5%
	홍보	53,229,600	48,998,060	4,231,540	92.1%
	정보아카이브	48,269,000	46,549,019	1,719,981	96.4%
	대학연계비영리스타트업육성 지원사업	100,000,000	91,630,320	8,369,680	91.6%

- 동 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1.8%)보다 상당히 높고 사업 중 편성예산 대비 초과 집행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발전연구 사업, 사업설명회, 대외협력 사업 등의 집행실적은 저조

한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민간위탁금 집행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9천 5백만원 을 변경사용하였음.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감액	증액				
인건비	기본급	897,550	△34,828	-	센터장 승인일 2019.12.27.	862,722	828,248	34,474 (4%)
	부가급	575,766	-	34,828		610,594	610,527	67 (0.01%)
운영비	사무관리비	220,965	△1,000	-	센터장 승인일 2019.7.24.	219,965	190,344	29,621 (13.5%)
	공공운영비	52,140	-	1,000		53,140	45,733	7,407 (13.9%)
사업비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247,000	△59,000	-	센터장 승인일 2019.11.11. 2019.12.04.	188,000	157,924	30,076 (16%)
	자치구지역공동체 기반조성	352,700	-	52,000		404,700	369,773	34,927 (8.6%)
	동마을자치생태계 조성지원	1,361,520	-	7,000		1,368,520	1,244,480	124,040 (9.1%)

- 주요 사유로는 민간위탁 사업 중 퇴직 적립금 추계 비용을 위해 (인건비내) ‘기본급’에서 3천 5백만원,
- 공공요금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위해(운영비 내) ‘사무 관리비’에서 100만원,
- 주민자치회 예산교육 및 교재 제작과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위해(사업비 내) “마을공동체정책연구”에서 5천 9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 변경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공동체정책연구”과 ‘사무관리비’는 감액 변경사용이후에도 각각 3천만원(16.0%, 13.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 “동마을자치생태계조성지원” 사업과 ‘공공운영비’는 증액 변경사용하였으나,

각각 증액 변경사용한(1백만원, 7백만원)것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740만원, 1억2천4백만원) 발생하였는바, 변경사용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업이었음.

- 동 센터의 2019회계연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불용규모(4억 1천 9백만원(7.2%))가 크고,

〈2019년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건비	1,607,414,389	1,607,414,389	1,551,921,278	55,492,722	96.5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비	504,941,000	504,941,000	390,163,846	114,777,154	77.3
사 업 비	3,369,166,000	3,369,166,000	3,119,662,845	249,503,155	92.6
1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247,000,000	188,000,000	157,923,910	30,076,090	84.0
2 마을공동체활동가역량강화	294,500,000	294,500,000	283,025,981	11,474,019	96.1
3 자치구지역공동체 기반조성지원	352,700,000	404,700,000	369,772,751	34,927,249	91.4
4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341,446,000	341,446,000	331,660,115	9,785,885	97.1
5 서울형 커뮤니티거점활성화 지원사업	772,000,000	772,000,000	732,800,434	39,199,566	94.9
6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지원	1,361,520,000	1,368,520,000	1,244,479,654	124,040,346	90.9
이 월 금	378,111,497	378,111,497	378,111,497	0	100

-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실적도 부진하며 3년 연속 반복적으로 불용 규모가 상당하고 불성실한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합리적인 예산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181,000	159,315 (88.0%)	235,000	215,906 (93.4%)	247,000	30,076 (84.0%)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지원	1,123,000	1,042,382 (92.8%)	1,818,436	1,478,325 (84.9%)	1,361,520	1,244,479 (90.9%)

- 동 센터에 대한 2019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장기간 수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 및 예산 사용시 지출증빙 미비(수의계약 사유서 미첨부), 국외여비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의 사업비로 편성 등 부적정 예산 과목 편성(해외 사례 견학의 국외연수의 경우 사업비로 진행하여야 하나 운영비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국외여비로 수의계약을맺어 추진), 근거 없는 민간인 국외연수 지원 등 매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합법적이고 충실한 사무의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업 점검결과

점검내역	점검 결과	조치사항	이행요구 내용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주제선정 시 내부직원 심사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객관성 확보가 부족함 -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 또는 공유하는 경로 부족 	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에 외부위원 및 시(지역공동체담당관) 직원을 포함 할것 ○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결과보고서 홍보방안 마련 필요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중간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에 국외연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센터 직원외 민간인에 대한 국외연수 추진은 법적근거가 없음 	이행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민간인 참여 중단 및 사업내용 조정 필요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계획 지연으로 사업이 연말에 집중 추진(연말 계약체결 등) 되고 있음 	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계획이 3월 이전에 수립되어 연말 집행 지양 및 1개월 등 단기간 계약체결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 필요

예산 및 회계 점검결과

점검 내역	점검 결과	조치사항	이행요구 내용
지출증빙 첨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의계약사유서 첨부가 필수이나 간혹 미 첨부되어있으며, 동일업체 추진, 업체조회 등이 체크되는 서식(서울시)으로 변경 필요 	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업무 미숙지로 인지되며 서류보완이 필요하며 수의계약 사유서는 서울시 서식으로 변경 필요
신속한 지출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비 등 수당 지급이 사업추진 후 1개월 이상 가량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행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등 교육실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관련 수당에 대한 지급처리가 필요
지출시 예산과목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해외 사례 견학의 국외연수의 경우 사업비로 진행하여야 하나 운영비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국외여비로 수의계약을 맺어 추진 	이행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비와 사무관리비로 구분하여 사업비로 편성하며 사전 심의절차 이행 필요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점검결과

점검 내역	점검 결과	조치사항	이행요구 내용
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직원의 경우 카드 미소지를 이유로 수기 출퇴근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음 - 혁신파크 내 대외활동(강의, 심사)이 있는데 복무(출장)신고는 빠져있음 	이행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웨어 게시판 공지, 교육 등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수기 기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복무(출장)신고와 대외활동내역서를 일치시킬 것
초과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많아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개선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일중 하루를 가정의 날 등으로 명하여 초과근무가 없는 날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 “동북권 NPO 지원센터”의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5건에 1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사업분야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감액	증액				
인건비	기본급	173,135		2,033	센터장 승인일 19.12.24.	175,168	175,168	0 (0%)
	제수당	66,558	△3,089			63,429	63,428	1 (0%)
	퇴직충당금	19,974	△40	710		20,704	20,693	11 (0%)
	보험료	22,446		346		22,812	22,805	7 (0%)
운영비	복리후생비	1,600		20	센터장 승인일 19.12.3.	1,620	1,618	2 (0%)
	범용S/W 구입비	6,224		1,700		7,924	7,615	309 (3.9%)
	지급수수료	2,060		700		2,760	2,602	158 (5.7%)
	운영수당	7,104	△2,420			4,684	3,038	1,646 (35.1%)
	국내여비	5,160		600		5,760	5,453	307 (5.3%)
	임차료	8,107	△900			7,207	4,524	2,683 (37.2%)
	우편통신비	6,260	△3,500			2,760	2,545	215 (7.8%)
	홍보인쇄비	5,020		3,800		8,820	8,581	239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분야	사업명		감액	증액				
								(2.7%)
사업비	동북NPO홍보 및 웹플랫폼	48,201		1,500	센터장 승인일 19.12.19.	49,701	49,588	113 (0%)
	동북권NPO 네트워크회의	9,500	△4,200			5,300	4,581	719 (13.6%)
	조사, 연구, 정책개발	19,680		2,700		22,380	22,296	84 (0.4%)
	의제별 워킹그룹역량강화	13,942		1,100	센터장 승인일 19.12.3.	15,042	13,793	1,249 (8.3%)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31,803	△1,100			30,703	30,151	552 (1.8%)

- 주요 사유로는 기본급, 퇴직충당금, 보험료 예산 확보를 위해 (인건비 내) 제수당에서 313만원,
- 범용S/W구입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예산 확보를 위해(운영비 내) 운영수당에서 242만원,
- 홍보인쇄비, 국내여비 예산확보를 위해(운영비 내)우편통신비, 임차료에서 440만원,
- 동북권NPO홍보 및 웹플랫폼, 조사연구, 정책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사업비 내) 동북권NPO네트워크회의에서 420만원,
- 의제별 워킹그룹 역량강화 예산 확보를 위해(사업비 내)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에서 11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동 센터의 변경사용은 전부 12월에 센터장 승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의제별 워킹그룹역량강화” 사업은 110만원을 증액 변경사용하였으나, 불용액 120만원이 발생한바,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음.
- 또한, 2019년 지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계약 및 예산 사용시 지출 증빙 미흡(수의계약사유서 미첨부), 사무편람 미비, 복무관리전산시스템 미구축 등이 지적된바, 민간위탁사무의 충실한 사무의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포 마을활력소”의 변경사용은 3건에 56만원으로, 운영비 항목 내 센터 물품구입을 위하여(운영비 내) ‘시설비’에서 30만원, 마을이야기 사업을 위해(사업비 내) “세대어울림 사업”에서 25만원, 마을력 활성화 사업을 위해(사업비 내) “세대어울림 사업”에서 14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시설비	29,495	△300		센터장 승인일 2019.04.15	29,495	29,052	443 (1.5%)
	자산취득비	1,300		300		1,600	1,600	- (0%)
사업비	마을이야기	8,625		250	센터장 승인일 2019.09.03	8,902	8,869	33 (0.3%)
	세대어울림	7,504	△264			7,240	7,069	171 (2.4%)
	마을력활성화	11,028		14		11,042	10,462	580 (5.3%)

- 2019년 마포마을활력소 수익사업 운영계획과 지도점검 결과, 마포마을 활력소에서는 직영으로 ‘작은나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카페의 수익금은 자체 집행하고,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예산총계 주의원칙에 따른 세입 처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동 사업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 계획에 의하면 주류도 판매하고 있는바, 서울시 공유재산인 마을활력소에서 가능하고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카페의 사업자가 수탁법인인지 여부 등 사업자의 명확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마포마을활력소 수익사업 운영계획〉

1. 사업별 수입금 집행계획

○ 주민 커뮤니티카페 _ 작은나무 운영 수입

- 마을 관계망의 시작이자, 주민의 생활 거점 공간으로서 복합적 커뮤니티 카페 운영

수입계획		비고
내용	금액	
커피, 차, 주류	5,310,000원*12개월=63,720,000원	
아이스크림 등	350,000원*12개월=4,200,000원	
기타 물품	1,000,000원*12개월=12,000,000원	
합계	79,920,000원	
집행계획		비고
내용	금액	
인건비 (1.5명)	기본급 3,000,000원*12개월=36,000,000원	
	사회보험 160,000원*12개월=1,920,000원	
재료비 및 운영비	2,000,000원*24개월=24,000,000원	
기타운영비 (후원금, 행사비 등)	1,500,000원*12개월=18,000,000원	
합계	79,920,000원	

- 작은나무 카페 메뉴

메뉴	가격	메뉴	가격
아메리카노	3000/ 3500	오미자차	4500 5000
에스프레소	3000/ 3500	매실차	4500 5000
작은나무 핸드드립커피	3500/ 4000	담금차 레몬/ 사과생강/ 유자	5000 5500
콘파나	4000/ 4500	로얄 밀크티	5500
카푸치노	4500/ 5000	과일쥬스	5000
카페라떼	4500/ 5000	에이드 블루레몬	6000
카페비엔나	4500/ 5000	스무디 유자/ 딸기/ 망고	6000
카페모카	5000/ 5500	유기농소프트아이스크림	3500
아포가또	5500	생맥주 350ml / 450ml	4500/ 5000
더치커피	5000	병맥주	4000/ 5000/ 6000
홍차	4000		
허브티	4000 4500		
코코아	5000 5500	대구포	9000
곡물라떼	5000 5500		

○ 마포마을활력소 시설 사용료 수입

- 주민 커뮤니티 카페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주민 참여 워크샵, 공유부엌, 정기강좌 등을 통한 공간 사용
- 비정기적인 마을 주민 및 단체의 공간 사용

수입계획			비고	
내용	금액			
실별 공간사용료 수입	10,000원*4시간*30회*12개월 = 14,400,000원			
장비사용료 추가 수입	5,000원*7회*12개월= 420,000원			
합계	14,820,000원			
집행계획			비고	
내용	금액			
시설이용 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기본급	1,045,000원*12개월=12,540,000원		
	퇴직적립금	1,045,000원 / 12*12개월=1,045,000원		
	기 관 부 담	국민연금		47,020원*12개월=564,240원
		건강보험		32,600원*12개월=391,200원
		장기요양보험		2,400원*12개월=28,800원
		고용보험		9,400원*12개월=112,800원
		산재보험		8,070원*12개월=96,840원
		소계		1,193,880원
기타비용	장비수선비	41,120원*1회=41,120원		
합계	14,820,000원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변경사용은 1건에 380만원으로, 십대와 청년 마을배움 사업을 위해(사업비 ⇒ 사업비) “마을배움터 아카이빙”사업에서 112만원, “마을배움네트워크 및 공유지” 사업에서 268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		예산변경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사업비	마을배움터 아카이빙	44,928	△1,120		센터장 승인일 2019.5.15	43,808	43,808	- (0%)
	마을배움네트워크 및 공유지	32,232	△2,680		센터장 승인일 2019.11.13	29,552	29,552	- (0%)
	십대와청년 마을배움	44,740		3,800		48,540	48,536	4 (0%)

- 2019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수기 작성 후 지급, 위탁 기간(만료일 2021년 1월 8일)을 초과하는 업무차량 리스 계약(만료일 2023년 4월 10일) 등 미흡한 회계와 계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2019년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반납내역			
					반납총액	교부금 집행잔액	기타수입	
							통장 이체수입	기타접수입
총 계	505,085,000	504,362,000	504,362,000	501,940,390	2,722,737	2,421,610	111,127	190,000
인건비	287,685,000	286,962,000	286,962,000	284,543,940	2,532,706	2,418,060	111,096	-
운영비	95,500,000	95,500,000	95,500,000	95,500,000		-		
사업비	121,900,000	121,900,000	121,900,000	121,896,450		3,550		
기타수입	-	-	-	-	190,031	-	31	190,000
운영비 (명시 이월)	62,956,000	62,956,000	62,956,000	62,956,000	-	-	-	-

- 동 센터는 2019년 민간위탁금의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미제출하여 사업별 집행 실적을 검토할 수가 없었으며,
-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명시이월’¹⁾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 등 민간위탁금의 자의적인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전용은 1건에 총 150만원으로 2019년 6월 30일 상반기 수탁기관(흥사단) 종료로 인한 센터 물품 보관비 예산 확보를 위해 상반기 사업비 예산을 전용(사업비 ⇒ 운영비) 하였으며,

〈2019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교부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센터장 승인일 경우 명시)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교부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운영비	59,000		1,500	서울시 승인일 '19.6.21	59,000	43,857	15,143 (25.7%)
	사업비	407,980	△1,500			407,980	328,779	79,201 (19.4%)

1) 명시이월 사유로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조성공사가 2018년 5월에서 2019년 6월로 늦어짐에 따라 당초 예상한 소모품 구입 및 자산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2018년 세출 예산중(운영비/ 62,956,000원) 일부를 명시이월.

- 변경사용은 3건에 총 868만원으로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단체 추가(1개) 선정 지원을 위해(포럼비 ⇒ 지원비) “민주시민교육역량 및 네트워킹강화” 사업의 ‘포럼비’에서 300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상반기(2019년 6월 30일) 수탁기관(홍사단) 사업 종료에 따른 센터직원 퇴직 정산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운영경비 ⇒ 인건비) 510만원, ‘인건비’ 내(연장근로수당 ⇒ 연가보상비) 세목변경으로 58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3백만원을 증액 변경사용 후 1천 6백만원을 불용처리한바, 변경 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었으며,
- “민주시민교육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사업은 감액 조정(3백만원)이후에도 73.4%(940만원)를 불용시켜 동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률은 26.6%(340만원)에 불과인바, 불성실한 사업 집행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1,583		4,423	홍사단 이사회 승인일 '19.6.14	6,006	4,718	1,288 (21.4%)
		연장근로수당	13,338	△583			12,755	11,350	1,405 (11.0%)
		퇴직충당금	10,498		1,260		11,758	11,338	420 (3.6%)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7,235	△2,500			14,735	12,780	1,955 (13.3%)
		공공운영비	5,068	△1,000			4,068	2,130	1,938 (47%)
		위원회운영	11,879	△1,600			10,279	5,687	4,592 (44.7%)
사업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지원비	190,000		3,000	'19.6.14	193,000	176,538	16,462 (8.5%)
	민주시민교육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포럼비	15,897	△3,000		'19.6.14	12,897	3,432	9,465 (73.4%)

- 한편, 동 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규정의 미준수와 근태관리 소홀 등의 지적이 있었음.

〈2019년 지도 점검 결과〉

<input type="checkbox"/> 세부 지도점검 결과		
1. 예산 및 회계 분야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 미 가입 - 지출원 등 회계관계 직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미 이행	재정보증보험 가입 이행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 미 가입 -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시에 제출해야 하나 미 가입	이행보증보험 가입 이행
민간위탁금 등 관리 통장증빙서류 관리 등	○ 통장 및 회계장부 정리, 지출증빙서류 관리 등 양호	해당없음
2. 고용(인사·복무·급여) 분야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
인사관리	○ 센터장 공개채용 과정 및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등 적정	해당없음
복무 관리	○ 근태관리 소홀 - 출퇴근 기록기 미사용 및 수기 등록(구입 후 20여일) - 출퇴근 기록기 카드 이용	지문인식으로 변경 사용
급여관리	○ 급여지급 기준(호봉) 부적정 : 센터장이력서 미제출 ○ 센터장 신규 채용(2019.11.11.)시 근로계약(임금산정)내용 부적정 : 서울시 예산지원지침 위반	- 이력서 제출 보완 - 근로계약(임금산정)내용 재확인 및 근로계약서 재 작성

3. 안전, 물품, 시설관리 분야

점검내역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
보험(화재, 손해)가입 여부	○ 덕산빌딩 건물 자체 가입	해당없음
물품 재물조사 실시 여부	○ 2019. 11월 재물조사 실시	해당없음

4. 기 타

○ 사무편람(업무 매뉴얼) 미 정비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에 의거 수탁사무의 종류별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일 현재까지 사무편람 미 정비

- 동 센터의 2019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동 센터의 핵심 사업인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의 콘텐츠 개발사업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 “포럼 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집행실적은 각각 4.8%, 31.4%로 극히 저조한 반면, “업무추진비”는 100%를 집행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9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4,009	54,009	47,179	6,830	87.4
인건비-기본급	기본급	29,875	29,875	29,490	385	98.7
	연장근로수당	4,451	4,451	3,046	1,405	68.4
	정액급식비	1,625	1,625	1,569	56	96.6
	연가보상비	1,583	1,583	295	1,288	18.6
	직급보조비	1,888	1,888	1,818	70	96.3

	관리자수당	400	400	333	67	83.3	
	상여금	5,919	5,919	4,151	1,768	70.1	
인건비-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3,812	3,812	3,392	420	89.0	
인건비-보험료	4대보험 기관부담금(하반기)	4,456	4,456	3,085	1,371	69.2	
운영비	운영비 소계	40,381	40,381	25,238	15,143	62.5	
운영비-운영경비	사무관리비	9,977	9,977	8,022	1,955	80.4	
	공공운영비	2,000	2,000	63	1,937	3.2	
	교육훈련비	944	944	0	944	0.0	
	위원회운영	7,368	7,368	2,776	4,592	37.7	
	임차료	4,400	4,400	3,749	651	85.2	
	우편통신비	2,350	2,350	586	1,764	24.9	
	유인물비	2,100	2,100	473	1,627	22.5	
	기간제근로자채용	8,634	8,634	8,556	78	99.1	
	국내여비	1,664	1,664	261	1,403	15.7	
		업무추진비	444	444	444	-	100.0
	자산취득비	500	500	308	192	61.6	
사업비	사업비 소계	257,953	257,953	178,752	79,201	69.3	
사업비	추진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1,820	11,820	3,714	8,106	31.4
		현장 욕구 및 수요 조사	16,992	16,992	15,392	1,600	90.6
	민주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57,953	57,953	41,491	16,462	71.6
		사업운영비	6,196	6,196	4,574	1,622	73.8
		안내서 제작 및 보급비	4,000	4,000	3,782	218	94.6
		콘텐츠 개발비	16,992	16,992	0	16,992	0.0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992	11,992	6,000	5,992	
	시민사회 참여 모임(동아리)지원	동아리 지원비	90,000	90,000	80,303	9,697	89.2
		사업운영비	15,748	15,748	6,895	8,853	43.8
	민주시 교육 역량 및 네트워 킹강화	포럼비	9,940	9,940	475	9,465	4.8
시민정책가 워크숍		10,000	10,000	10,000	0	100.0	
공유대회		6,320	6,320	6,126	194	96.9	

-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 센터의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50만원)으로 편성한바, 규정에 위배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예산과목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함)	비고
400	402 민간자본이전	<p>03. 민간위탁사업비</p> <p>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p> <p style="margin-left: 20px;">※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p> <p style="margin-left: 20px;">※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p>	

2) 민간위탁 사업의 자의적인 공모사업 관리 부실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6개 기관중 2019년 공모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서울시 NPO지원센터,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마포마을활력소로,
- 13개 사업에 총 10억 3천 3백만원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94.5%(9억 7천 6백만원), 불용액은 5천 7백만원(5.5%)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 현황〉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생활속민주주 의학습지원 센터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193,000	176,538	16,462	8.5%
	시민 사회참여모임 지원	90,000	80,303	9,697	10.8%
서울시 NPO지원센터	조직변화지원사업	95,270	89,923	5,347	5.6%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91,260	90,758	502	0.6%
	활동가역량강화지원사업	66,420	64,980	1,440	2.2%
	공익활동공간 나눔지원사업	1,700	1,683	17	1.0%
	NPO참여예산제	73,909	72,983	926	1.3%
	대학연계 비영리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100,000	91,630	8,370	8.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로컬랩동네발전소(1차)	280,690	271,244	9,446	3.4%
	로컬랩동네발전소(2차)				
	공동체공간 자산화 기반마련	40,000	35,208	4,792	12%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십만원 프로젝트	1,200	1,000	200	16.7%
마포 마을활력소	창년인큐베이팅 공간지원사업	선정 단체에 활력소 내 공간 지원 사업으로 비예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 지원예산은 규모가 크지만, 민간위탁금 사업 중 일부인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며,
 - 각 사업별 불용률이 큰 사업이 있음에도 점검 등이 미흡하고, 동 센터간 유사해 보이는 공모사업이 있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음.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준도 각기 다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도 있는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편법적인 예산 편성 지양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u>대행사무에</u>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u>대행하는 자에게</u>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u>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u>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2)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3)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3)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민간위탁금’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 2018회계연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9년 결산검사의견서〉

- **사무관리비로 운영사례 등을 통해 본 서울시 조직의 문제점**

사무관리비로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할 수는 있으나.

① 사무관리비 대비 지나친 비중. ② 소규모 수의계약의 형태. ③ 계약 건수, ④ 인건비적 성격의 용역비중, ⑤ 용역결과의 정책 및 신규 사업으로 이어진 횡수 등을 감안하면 정책개발이나 사업개발을 위해 꼭 필요했던 용역이라 보기 어려움.

- 행정자치위원회의 지적사항

민주주의위원회(전 혁신기획관)가 최근 몇 년간 여러 건의 사업을 위해 천억 원 가까운 돈을 교부해준 단체가 정직원이 1명밖에 없는 점, 그 단체의 사업방식이 재하청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단체의 출신이 민주주의위원회에서 개방형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비상식적 수탁업체 선정이라 보임.

다른 건으로 민주주의위원회(전 혁신기획관)의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비교견적이 위조되어 있던 점, 그 업체가 혁신기획관이 기존 수탁업체의 대표로 있을 때 용역을 주던 업체였던 점, 그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불법적인 면을 검토하기 전이라도 비상식적인 용역발주임이 분명함.

-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집행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의 사무감사에서 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 청년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 편성, 공유재산심의와 같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 유사 사업의 과도한 중복 편성, 사업의 성과평가가 안 좋은 점, 위탁업체의 심의 없이 진행한 국외여행에 대한 감시 소홀과 같은 외부기관에 대한 비통제 및 수탁기관에 대한 결산자료 미구비 등과 같은 불성실한 결산 등의 빈도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실국과 비교하면 행정의 공정성 및 준칙성이 떨어지는 것이 명백함.

○ 시정권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았을 때 위 실국이 타 실국에 비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단계에서 공정성과 준칙성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불법적인 면모가 있다 할 것임.

우선 감사위원회는 위 실국의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감사가 아닌 실질적 위법여부를 조사해야하고, 위 실국의 최근 5개년간의 용역발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함.

또한, 위 실국들이 타 실국과의 비교 시 위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내부통제가 안 되는 것은 담당 행정공무원들의 근속연수나 이전 부서의 업무평가를 보았을 때 정규직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전문가로서 들어온 개방형임기제로 인해 발생한 조직문화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성을 위해 개방형임기제로 외부 인사를 모집해야한다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사람을 뽑아야하고(행정경험이 있는 자), 그러한 자를 찾기 어렵다면 행정조직의 안정성, 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준칙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방형 임기제의 수를 최소화 하거나, 정책결정권자로 뽑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만약 개방형 임기제를 정책결정권자로 뽑았을 시에는 행정적 지식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최소 동등한 포지션에 행정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봄.

〈2018년 결산검사의견서〉

○ 문제점

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 중 용역과 관련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201-01)와 행사운영비(201-03)로,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되어있으며, 행사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민간용역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사회혁신담당관이 체결한 용역과제들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예산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수립·집행되었는지 의문임.

용역 계약명칭으로 판단해 볼 때, 서울 마을주간 기념행사 개최 용역,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용역, 미래혁신포럼 운영용역, 청소년 공유캠핑 운영 용역, 서울 인권아카데미 운영 용역,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대행용역 등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음.

또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용역,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 용역 등은 계약명칭 상 연구용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역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음.

○ 시정권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사회혁신담당관 외에도 거의 모든 실국에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와 구분 없이 용역비로 집행하고 있는바, 향후 각 실국의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 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서울시 전체적으로 2018년도 사무관리비 집행 용역사업 전체에 대해 법령과 지침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칙과 기준에 불부합한 사례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아울러,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실제 용역비 편성에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한다면,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보완을 통해 현실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재구성

○ 2018회계연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용역이 아닌 일반용역비 편성 및 집행의 빈번,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및 제세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실적을 분석해 보면,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23.8%, 7억7천5백만원) 과도, ‘사무관리비’ 내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 등이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의 성실한 관리와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부서	예산현액(A)	지출액(B)	불용액 (D = A-B-C)	불용률 (%)
총	3,256,843	3,089,227	775,498	23.8%
서울민주주의담당관	1,687,400	1,184,709	502,691	29.8%
시민숙의예산담당관	433,538	418,732	8,491	2.0%
서울협치담당관	702,500	1,058,519	258,178	36.8%
지역공동체담당관	433,405	427,267	6,138	1.4%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사무관리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A)	내역	집행실적	집행잔액 (B)	불용률 (B/A)
계	1,687,400		1,184,709	502,691	29.8%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1,681,000		1,179,183	501,817	29.9%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운영	341,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평가단 평가수당 : 120,960천원 - 행정전문평가단 운영 : 600천원 - 공론의제선정단 제안검토 선정수당 : 120,000천원 - 공론의제선정단 기획운영회의 : 30,000천원 - 제안결과 모니터링 운영 : 70,000천원 	102,022	239,538	70.1%
정책박람회 개최	7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 운영 = 18,000천원 - 정책박람회 백서 제작 등 = 28,000천원 	4,420	66,580	93.8%

			- 정책박람회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등 : 25,000천원			
	민주주의 서울 기획운영	1,261,840	- 기획 운영 총괄 : 51,840천원 - 기획운영 용역 : 300,000천원 -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 : 30,000천원*4회 = 120,000천원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 : 10,000천원*10회 = 100,000천원 - 서울시가 묻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 : 30,000천원*10회 = 300,000천원 - 기관 연계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 20,000천원*5개 기관 = 100,000천원 - 시민 제안 실험장 시범 운영 : 5,000천원	1,071,480	190,360	15.1%
	통합시스템 운영	6,600		1,261	5,339	80.9%
	민주시민교육 추진	6,400		5,526	874	13.7%
	민주시민 교육 자문 위원회 운영	6,400	- 참석수당 : 100천원*15명*4회 = 6,000천원 - 회의운영비 : 100천원*4회 = 400천원	5,526	874	13.7%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내역	집행 실적	집행잔액 (B)	불용률 (B/A)
계	433,538		418,732	8,491	2.0%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393,538		381,928	5,295	1.3%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경비	86,112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0명*20,000원*10회*80% · 위원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출장여비 300명*20,000원*2회*80% · 분야별 속기로 198,000원*2시간*18개분과*4회	101,183	-15,071	-17.5%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운영경비	11,826	· 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0,000원*20명*18회*참석률90% · 회의 속기로 198,000원*1.5회*18회	8,768	3,058	25.9%
	예산학교 운영비	100,000	· 기본교육 1,500,000원*30회 · 심화교육 750,000원*20회 · 찾아가는 예산학교 2,000,000 원*20회	106,743	-6,743	-6.7%
	참여예산제도 매뉴얼북 제작, 배포	22,000		1,980	20,020	91.0%
	시민참여예산 홍보, 위촉식, 토론회 등	25,000		45,812	-20,812	-83.2%
	시민참여예산제 백서 발간	20,000		16,000	4,000	20.0%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107,000	· 제안사업 선호도 조사 30,000,000원 · 컨설팅 및 자문회의 150,000원*15명*12회 · 공론장 운영 등 50,000,000원	77,921	29,079	27.2%
	기타경비	21,600		23,522	-1,922	-8.9%
	시민 예산절약성과금 제 운영	10,000		9,621	379	3.8%
	심의위원회 운영 등	10,000		9,621	379	3.8%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시민참여)	30,000		27,183	2,817	9.4%
	총괄 PM 담당	4,900	· 700,000원*7개월	12,039	-7,139	-145.7%
	강사료	8,800	· (230,000원*1명*10회)+(130,000 원*5명*10회)	3,589	5,211	59.2%
	강사 심화교육 (워크숍) 및 활동보고회	4,400	· (1,500,000원*2회)+(1,400,000 원*1회)	4,186	214	4.9%
	기록물제작비 (영상)	5,000	· 5,000,000원*1식	2,800	2,200	44.0%
	대관료 등 홍보비	6,900	· (550,000원*10회)+(200,000원*7개월)	4,569	2,331	33.8%

〈서울협치담당관 사무관리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내역	집행실 적	집행 잔액 (B)	불용 률 (B/A)
계		702,500		1,058,519	258,178	36.8%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505,200		425,005	80,195	15.9%
	협치체계구축	300,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치자문운영 = 51,840천원 - 협치협의회 및 협치추진단 운영 = 17,200천원 - 협치사업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 70,000천원 - 협치워크숍 개최 = 15,000천원 -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운영 = 78,000천원 - 협치제도 개선을 위한 '진단과 권고' 과정 운영 등 = 68,000천원 	273,726	26,314	8.8%
	시정 협치교육 운영 등	126,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치학교 분과위원회(수당,회의운영비) = 20,000천원 - 협치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수당,회의운영비) = 7,000천원 - 협치교보재 제작(사례서) = 20,000천원 - 시정 협치교육 프로그램 운영 = 54,560천원 - 협치백서 제작 = 25,000천원 	72,744	53,816	42.5%
	민간자원연계 등 민관공동협 력 활성화	78,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 18,800천원 - 사회공헌 혁신포럼(발표비,인쇄비,기타부대비용등) = 22,000천원 -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제작(인쇄비 등) = 10,000천원 	78,535	65	0.1%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회의운영비) = 7,800천원 - NPO모금역량 강화 지원 = 20,000천원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0,000		8,561	1,439	14.4%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운영	10,000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수당,회의운영비) = 10,000천원	8,561	1,439	14.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등 지원		137,300		119,480	17,820	13.0%
	선정 심사자료 및 평가보고서 등 제작 인쇄	10,000	- 선정 심사자료 및 평가보고서 제작 인쇄 = 10,000천원	9,125	875	8.8%
	사업설명회 자료집 및 집행 지침 책자 등 제작 인쇄	4,500	- 사업설명회 자료집 및 집행지침 책자 등 제작 인쇄 = 4,500천원	9,372	-4,872	-108.3%
	공익활동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포럼 개최	10,000	- 공익활동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포럼 개최 = 10,000천원	9,827	173	1.7%
	위원회, 평가단 등 수당	72,800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참석수당, 심사수당) = 22,500천원 - 공익사업평가위원회(참석수당,현장방문 및 평가수당 등) = 50,300천원	74,894	-2,094	-2.9%
	공익활동지원사업 회계처리(컨설팅) 및 정산 용역비	40,000	- 공익활동지원사업 회계처리(컨설팅) 및 정산 용역비 = 40,000천원	16,262	23,738	59.3%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50,000		10,719	39,281	78.6%
	권역센터 추가 조성 공간 임차 료 등	50,000	- 임차료, 관리비 등 : 7,000천원*6개월 = 42,000천원 - 자문회의 및 부대비용 = 8,000천원	10,719	39,281	78.6%
지역협치 활성화		434,197		350,905	83,292	19.2%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운영	249,210	- 사업설명회 = 3,000천원 - 안내서 제작, 배포 = 8,410천원 - 지역협치 성과평가 심사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성과평가 운영체계 구축 및 지표개발) = 100,000천원	207,362	41,848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협치 수립 및 실행 지원 (컨설팅단 운영, 협의조정 회의 운영, 지역분과회의 등 운영) = 117,800천원 - 협치00구 회의 민관 실무자 워크숍: 5,000천원*1식 = 5,000천원 - 정책토론회 운영: 2,500천원 *1식*4회 = 10,000천원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운영	46,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1차 회의 = 4,02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2차 회의 = 4,50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3차 회의 = 4,020천원 - 성과평가지표 개발 워크숍 = 8,000천원 - 성과평가회의 = 9,800천원 - 플랫폼 선정 심의위원회 = 2,880천원 - 집행지침 교육 = 1,320천원 - 특강 및 간담회 = 1,650천원 - 성과공유회 = 7,000천원 - 자문회의 = 3,760천원 	36,406	10,544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협치 역량강화 교육 = 15,050천원 - 지역협치 전문기술 교육 = 29,400천원 - 지역협치 실행지원 교육 = 14,875천원 - 지역협치 전문강사 양성교육 = 7,882천원 - 교육실행준비 (교육과정 개발비, 동영상, 사례서, 교보재 개발) = 35,000천원 - 교육컨설팅단 운영 = 8,610천원 			
	협치학교(지역	110,817		89,093	21,724	19.6%

	협치분야) 실행					
	지역사회 민민 협력 기반조성 사업지원	27,220	- 보조금심의위원회 = 5,760천원 - 사업설명회 겸 간담회 = 4,560천원 - 집행지침교육 = 2,640천원 - 분기별 성과교류회 = 10,500천원 - 자문회비 = 3,760천원	18,044	9,176	33.7%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156,000		124,437	31,563	20.2%
	협약 체결을 위 한 공론과정	55,000	- 사회협약 포럼 운영: 5,000천 원*5식 = 25,000천원 - 사회협약 선포대회: 30,000 천원*1식 = 30,000천원	21,900	33,100	60.2%
	협약추진준비위 원회 운영	71,000	-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구 성(수당,운영비) = 21,000천원 - 사회협약 대상자 등 발굴 추 진 = 45,000천원 - 사회협약 워크숍 운영 = 5,000천원	72,537	-1,537	-2.2%
	사회협약 대상 과제 현황 진단 조사용역	30,000	- 사회협약 대상과제 현황 진 단 조사용역: 30,000천원*1 식 = 30,000천원	30,000	-	0.0%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24,000		19,412	4,588	19.1%
	협약평가 자문 단 회의 운영	24,000	- 평가지표 개발 자문회의: 2,000천원*5회 = 10,000천원 - 협약평가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3,000천원*2회 = 6,000천원 - 협치역량평가 회의 개최 및 부대비용: 4,000천원*2회 = 8,000천원	19,412	4,588	19.1%

〈지역공동체담당관 사무관리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내역	집행실적	집행잔액 (B)	불용률 (B/A)
계		433,405		427,267	6,138	1.4%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165,300		164,324	976	0.6%
	마을활력소 공간 대부료	72,600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대부료 : 57,744천원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대부료 : 14,826천원	73,946	-1,346	-1.9%
	마을활력소 운영 및 홍보 등	92,700	- 공간운영 매뉴얼 제작 : 10천원*500부 - 마을공간간 네트워크 운영지원 : 20천원*12회 - 마을공간 워크숍 운영 : 500천원*2회 - 마을활력소 홍보 및 교육 : 15,800천원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비 : 1,000천원*12개월 - 공동체공간 지도제작 : 2천원*20,000부 - 성과공유회 : 7,500천원*1식	90,378	2,322	2.5%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158,105		153,072	5,033	3.2%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14,775	- 위원회 위원 수당 : 150천원*14명*3회*0.75 - 소위원회 : 150천원*14명*6회*0.75 - 속기료 200천원*3회	15,903	-1,128	-7.6%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23,330	- 자치구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보조금심의 운영 : 2,430천원*1회 - 찾동 지원사업 심사 운영 : 17,100천원*1식	8,144	15,186	65.1%
	마을공동체 홍보	90,000	- 홍보 사례 책자 발간 : 40,000천원*2종	87,139	2,861	3.2%

			- 홍보동영상 제작, 언론캠페인 : 10,000천원*1식 - 마을공동체 백서 발간 : 40,000천원*1종			
	마을공동체 교육	20,000	- 마을현장 우수사례 현장 견학 : 12,000천원*1회 - 마을공동체 교육 자료 제작 : 8,000천원*1식	37,422	-17,422	-87.1%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운영 경비	10,000	- 용역 운영비 : 10,000천원*1식	4,464	5,536	55.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20,000		19,904	96	0.5%
	찾동 교육자료 제작 등	20,000	- 찾동 교육자료 제작 : 5,000천원*4회	19,904	96	0.5%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40,000		39,967	33	0.1%
	중간지원조직 현장조사	10,000	- 중간지원조직 현장 조사 : 10,000천원*1회	11,578	-1,578	-15.8%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소통 지원	25,000	- 마을생태계조성 소통 워크숍, 마을자치생태계 조성 민관 합동워크숍, 소통회의 : 25,000천원	24,878	122	0.5%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5,000	-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 5,000천원*1식	3,511	1,489	29.8%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50,000		50,000	-	0.0%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50,000	- 조사비 : 100천원*200개소 - 인건비 : 30,000천원*1식	50,000	-	0.0%

-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예산 편성이 용이하다는 사유로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편성 및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예산과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의 철저한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7%로 전년 (3.5%)보다 높아졌으며, 일반회계 전체 규모(1.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이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사업에서 6억 7천 1백만원(22.5%),
- 협치와 협업을 강조하는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지 않게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에서 1억 9천 2백만원(5.4%),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8천만원(15.5%),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사업에서 5천 4백만원(21.6%),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체결” 사업에서 3천2백만원(20.5%)을 불용처리했으며,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맞지 않게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에서 7억 2천 8백만원(2.4%),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사업에서 6억 3천 5백만원(5.4%)을 불용처리하였음.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2,976	2,021	284	671	22.5%
시민민주주의기반조성	2,976	2,021	284	671	22.5%
시민제안발굴 및 실행	2,976	2,021	284	671	22.5%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661	615	-	46	7.0%
민주시민양성 기반조성	661	615	-	46	7.0%
민주시민교육 추진	661	615	-	46	7.0%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723	708	-	15	2.1%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723	708	-	15	2.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673	666	-	7	1.0%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20	15	-	5	25.0%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시민참여)	30	27	-	3	10.0%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21,061	20,335	101	625	3.0%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21,061	20,335	101	625	3.0%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515	435	-	80	15.5%
서울시 NPO 지원센터 운영	2,393	2,198	-	195	8.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397	2,347	16	34	1.4%
서울시 동북권MNPO지원센터 운영	692	659	-	33	4.8%
지역협치 활성화	3,534	3,342	-	192	5.4%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250	111	85	54	21.6%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체결	156	124	-	32	20.5%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24	19	-	5	20.8%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11,100	11,100	-	-	0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30,369	29,641	-	728	2.4%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30,369	29,641	-	728	2.4%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11,731	11,097	-	635	5.4%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403	348	-	55	13.6%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482	5,481	-	-	0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1,779	1,763	-	16	0.9%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지원(마을분야)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8,476	8,454	-	22	0.3%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50	50	-	-	0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2,388	2,388	-	-	0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시민참여)	50	50	-	-	0
사람이 아름다운 약초마을 만들기(시민참여)	10	10	-	-	0
일 반 예 산 계	125	120	-	5	4%
기 본 경 비	125	120	-	5	4%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협치, 시민참여, 마을공동체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억원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 관리비	1,663,845	1,204,599	459,245	27.6%	공론장운영이비용수반이적은온라인에집중되어개최되면서오프라인공론장개최비용집행이낮아짐 공론의제선정단회의의효율적진행

						을위해불필요한회의를줄여횟수를 조정함으로써예산절감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기타 보상금	20,000	3,050	16,950	84.8%	시민이시정에참여할수있는경로가 다양화되어제안이분산적으로등록됨. 따라서좋은제안선정회의심의에올라갈안건자체가감소하여집행률이낮아짐('20년예산편성시 감액 편성(△10,000,000원))
시민 예산 절약성과 운영	기타 보상금	10,000	4,974	5,026	50.3%	○예산낭비 및 절감제안 신고내용이 단순 민원 및 아이디어 수준인 경우가 많아, 심사 결과 고액 지급 대상자가 많지 않았음 ('20년 예산편성 시 최근 3년 평균 집행액으로 감액 편성(△3,000,000원))
서울시 NPO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2,382,835	2,189,430	193,404	8.1%	○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지역협치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00,000	2,600,000	100,000	3.7%	○ 2019년 시민협력플랫폼 수행단체 5개 중 1개 자치구 컨소시엄단체(성북구 소재)의 자체 평가 등의 사유로 중도 종료하여 시비보조금 감소(1억)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지원 체계 확대	사무 관리비	50,000	10,718	39,281	78.5%	○ 19년 7월 임대차계약 개시하여 동남권NPO 지원센터 6개월분 임차료로 지출 예정이었으나, 시민 접근성을 높일만한 NPO지원센터 설치장소를 구하는 데에 시간이 지체되어 19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을 개시하였고, 계약 협상 과정에서 3개월분 임차료 면제(렌트프리) 달성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행정-시민 사회-지역 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사무 관리비	156,000	124,436	31,563	20.2%	○ 2019년 협약의제 구성을 위한 민간 공론장 등 민간논의와 합의가 길어졌으며 이에 2019년말로 예정되었던 협약체결 일정을 2020년 상반기로 연기하여 협약체결식 등을 위한 예산이 불용됨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920	26,189	54,730	67.6%	기간제근로자 2인 운영 중 퇴사 및 신규채용 등 상황 발생하여 불용됨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4,550	244,387	70,163	22.3%	○보조금 심사 결과 선정 기준 미달로 교부 규모 축소(4개소→1개소) ○공감워크숍 기신청 13개소 중 2개소 중도취소 ○찾동 마을활력소 2년차 사업비 감액조정

						○ 거점형 마을활력소(강동구 천호동) 개관시기에 맞추어 운영비 편성하였으나 완공 시기 지연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자치 단체 자본보조	9,495,600	9,031,609	463,991	4.9%	보조금 심사 결과 선정 기준 미달로 교부 규모 축소(4개소→1개소)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민간 경사업 보조	230,000	180,000	50,000	21.7%	보조금 심사 결과 선정 기준 미달로 교부 규모 축소(3개단체→2개 단체)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